##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77

발의연월일: 2021. 5. 10.

발 의 자:신영대·양정숙·김윤덕

신정훈 · 김교흥 · 김정호

서삼석 • 이워택 • 이규민

이학영 · 이동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는 '19년 전국 제조업 대비 생산, 수출, 고용 비중이 각각 6 3.9%, 65.7%, 49.2%에 이르는 등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기능하였음.

그러나, 국내 산업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산업단지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한국 경제 발전사를 함께 해 온 역사적 중요성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평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국립공원의 날, 바다의 날, 무역의 날 등 경제발전 및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을 기념일로 지정 하여 매년 정부 주도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한국 경제발전의 첨병 역할을 수행한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국가적 기념일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근거를 최초로 규정한 구 「수출산업 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인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 하여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 한 경제적 성과를 매년 기념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산업단지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산업 단지의 날을 매년 9월 14일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44조의2(산업단지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
	출한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날을 매년
	9월 14일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